

요청 도핑검사 및 교육홍보 지원 지침

제 정 2017. 11. 22.

시 행 2018. 1. 1.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단체”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단체”라 한다), 국제경기연맹, 국내경기단체 또는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는 도핑검사 또는 도핑방지 교육 및 현장홍보에 대한 신청절차 및 소요비용 산정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료채취기구가 도핑방지위원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협약 또는 문서로 정한다.

제 3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3. “조직위원회”란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 국제체육기구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행사”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기타 국제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국제체육 관련 회의 등을 말한다.
5. “국내행사”란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해당 종목의 대회와 회의, 강습회 등을 말한다.
6. “경기기간 중 검사”란 국제경기연맹 또는 관련 도핑방지기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참가예정인 경기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해당 경기 및 해당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절차가 끝나는 기간에 시행하는 도핑검사를 말한다.
7. “경기기간 외 검사”란 경기기간 중이 아닌 모든 기간에 시행하는 도핑검사를 말한다.
8. “검사주관기구”란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는 기구로서 시료를 채취할 권한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9. “시료채취기구”란 검사주관기구 또는 검사주관기구가 해당 책무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기구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요건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10. “결과관리기구”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검사(또는 기타 잠재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

의 결과) 결과관리 및 청문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11. “도핑방지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란 도핑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포츠 정신을 보존하고 도핑방지를 목적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도핑방지 현장홍보”(이하 “현장홍보”라 한다)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현장에서 선수, 임원, 지도자, 기타 관계자 등에게 도핑과 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현장홍보활동을 말한다.

제2장 도핑검사 요청

제 4 조(요청검사의 종류) 요청검사의 종류는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로 한다.

제 5 조(시료의 종류) 시료의 종류는 소변 또는 혈액으로 한다.

제 6 조(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다.

제 7 조(결과관리) ①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기구가 아닌 경우, 도핑검사의 모든 단계와 절차(검사배분계획,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 채취 및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등)는 해당 도핑방지기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가 결과관리기구인 경우 모든 단계와 절차는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제8 조(검사요청 절차) ① 검사를 요청하는 단체는 검사시행 30일 전까지 검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시행 20일 전에 해당단체에게 검사시행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기록 검사의 경우는 1일 1건으로 가정하여 통보하며, 신기록이 발생하지 않아도 1건의 비용을 청구한다.

③ 해당단체는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별표 1)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일자에 소요비용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검사시행 30일전에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한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9 조(도핑검사관 배정) 요청 도핑검사에 대한 도핑검사관 배정은 시료종류, 대회특성(경기기간 중 검사), 선수의 소재지(경기기간 외 검사) 등을 고려하여 도핑검사관 1인당 1~3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제10 조(요청기관 협조사항) 도핑방지위원회에 도핑검사를 요청한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를 지원

하여 도핑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샤프롱 제공(선수 1인당 1명 원칙, 미성년자 불가)
2. 도핑관리실 제공(출입통제가 가능하고 화장실이 인접한 곳, 행정실과 선수대기실이 분리 된 곳)
3. 도핑관리실 비품(선수 1인당 500ml 생수 3통 이상, 책상, 의자, 시료보관용 냉장고, 휴지, 휴지통, 칸막이 등)
4. 경기장 출입카드(AD카드, 주차카드 및 주차공간 등)
5. 기타 도핑방지위원회 요청사항

제3장 도핑방지 교육 및 현장홍보 요청

제11조(요청 절차) ① 교육 또는 현장홍보를 요청하는 단체는 행사개최 30일 전에 행사개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도핑방지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행사 20일 전에 해당단체에게 교육 또는 현장홍보 시행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교육 또는 현장홍보 시행 10일 전까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별표 2)을 도핑방지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일자에 소요비용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 또는 현장홍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검사시행 30일전에 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 또는 현장홍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한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 12조(요청기관 협조사항) 도핑방지위원회에 교육 또는 현장홍보를 요청한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하여 교육 또는 현장홍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 가. 교육장소 제공(빔 프로젝터, 컴퓨터, 마이크 등 교육시설이 갖춰진 곳)
2. 현장홍보
 - 가. 현장홍보장소 제공(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나. 자원봉사자 제공(최소 지원인력 2명)
 - 다. 도핑방지 홍보물품 제공
 - 라. 경기장 출입카드(AD카드, 주차카드 및 주차공간 등)
3. 기타 도핑방지위원회 요청사항

제4장 기타

제13조(업무협약 또는 문서) 각 호 1의 경우, 업무협약 또는 문서 등으로 별도로 정함이 있을 시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를 수 있다.

1. 국제체육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내개최 국제종합대회, 세계선수권 또는 그에 준하는 대회의 경우
3. 기타 대회규모와 검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7.11.22〉

제 14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회명 또는 훈련명) 검사요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일 반 사 항	대회명칭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기 간	•	
	장 소	•	
	검사주관기구	•	국제경기연맹(IF) 또는 KADA
	결과주관기구	•	상동
	경기종목	•	국제대회 시 영문 기입
	참가예상규모	• 0개국 0명	국제대회 시 기입
검 사 요 청 사 항	검사종류	• 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	
	시료종류 및 검사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검사인원 : 0명 (남 0명, 여 0명) · 소변검사(일반) : 0명 (남 0명, 여 0명) · 소변검사(ESAs) : 0명 (남 0명, 여 0명) · 소변검사(GHRFs) : 0명 (남 0명, 여 0명) · 혈액검사(ABP) : 0명 (남 0명, 여 0명) · 혈액검사(hGH) : 0명 (남 0명, 여 0명) · 혈액검사(BT) : 0명 (남 0명, 여 0명) · 혈액검사(CERA) : 0명 (남 0명, 여 0명) 	CERA의 경우 5건 이상만 요청가능
	분석결과언어	•	국문/영문 택1
	분석결과 수령 희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통상 시료결과 수령은 시험실 시료 도착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조기수령 희망 시 별도 추가 비용 발생하며, 시험실과 협의 후 결정)	
	비용부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검사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승인서류 (대회승인서, 해당 규정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지 제2호서식]

(행사명) 개최계획서

구 분		내 용	비 고
일 반 사 항	행사명칭	•	국제행사 시 영문기입
	기 간	•	
	장 소	•	
	참 가 예상규모	• 0개국 0명	
교 육 및 현 장 홍 보 요 청 사 항	요청내역	•	
	일 자		
	장 소	•	
	대 상	•0개국 0명	
	추 가 요청사항	•	
	비용부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검사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담당자(부서/직위/성명):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별표 1]

요청 도핑검사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내 역	시료유형	단 가	비 고
행정관리비	도핑검사관 운영관리, 검사용품 및 서식, 사무용품, 행정관리비, 직원출장 등	소변	50,000	건 당
		혈액	60,000	
		소변+혈액	70,000	
도핑검사관 경비	수당, 여비, 운송료 등 (숙박비, 항공료 별도 협의)		200,000	인 당
분석비	일반소변 (경기기간중)		270,000	건 당
	일반소변 (경기기간외)		220,000	
	소변 (ESAs)		300,000	
	소변 (GHRFs)		300,000	
	혈액 (GH) 1~5건		500,000	
	혈액 (GH) 6~10건		400,000	
	혈액 (GH) 11건 이상		300,000	
	혈액 (ABP) 1~10건		90,000	
	혈액 (ABP) 11건 이상		50,000	
	혈액 (CERA)		200,000	
	혈액 (BT)		300,000	
	IRMS (외인성여부 추가분석법)		300,000	

- 도핑검사관 인원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상대상이 아님
- IRMS 및 추가시료 발생 시 추가비용 청구될 수 있음
- 규정위반발생 시, 1회 개최시마다 청문비용(110만원), 향소비용(110만원) 청구될 수 있음

[별표 2]

요청 교육홍보 소요비용 산정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행정관리비	교육홍보강사 운영관리, 행정관리비, 직원출장 등	50,000
교육강사 경비	수당, 여비(숙박비, 항공료 별도 협의), 강의자료 등	200,000